

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9] <개정 2012.6.27>

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 (제32조 관련)

검 사 항 목	검 사 주 기	비 고
냄새, 맛, 색도, 탁도, 수소이온농도	1회 이상	
일반세균(저온균·중온균), 대장균군, 녹농균	주 2회 이상	3~4일 간격으로 실시
분원성연쇄상구균,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, 살모넬라, 쉬겔라	월 1회 이상	
「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	반기 1회 이상	

비고

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.